소통과 신뢰로 하나되는 창원특례시의회

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

제1~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(2026.9.2.~9.4.)

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예 비 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
(문화환경도시위원회)

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예 비 심 사 보 고 서

2026. 9. 2.~ 9. 4.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8. 26. / 창원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27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155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~제3차(2026.9.2.~9.4.)문화환경도시위원회 상정·의결(**의안번호 제46호**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: 기후환경국장 최영숙)

가. 제출근거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나. 제안사유

○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승인 받고자 함.

➪ 정책사업 기준 20%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승인 의무화

다. 市 전체 기금 현황

○ 기금조성[1] 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수	2025년도 말 현재액ⓐ	2026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6년도말 현재액 ⓓ=ⓐ+ⓑ-ⓒ	증 감 ⓔ=ⓓ-ⓐ
		수입ⓑ	지출ⓒ		
16개	417,130,032	84,671,399	74,727,081	427,074,350	9,944,318

○ 기금운용[2]계획

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					
계	전입금	보조금	차입금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예탁금 원금회수	예치금 회 수	예수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
192,544,222	8,749,136	993,000	6,000,000	10,872,000	31,658,333	76,214,490	31,388,523	11,806,210	14,862,530

지 출 계 획									
계	비융자성 사업비	융자성 사업비	인 력 운영비	기본 경비	예탁금	예치금	차입금 원리금상환	예수금 원리금상환	기타 지출
192,544,222	20,528,186	2,430,000	150,460	0	23,900,000	93,917,141	33,606,256	17,901,528	110,651

라.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(1건)

▣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[소관부서: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]

○ 기금설치 개요

(1) 설치근거: 「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

(2) 설치목적: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

(3) 설치년도: 2005년

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2025년도 말 조성액 ⓐ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도 말 조성액 ⓔ=ⓓ+ⓐ	비 고
	수입 ⓑ	지출 ⓒ	증감 ⓓ=ⓑ-ⓒ		
509,132	246,931	409,797	△162,866	346,266	

1) **기금조성**: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**누적 개념의 규모**로서 **내부거래(예치금, 예탁금 등)를 제외**한 기금재원의 총액을 나타냄

2) **기금운용**: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냄

○ 자금운용계획 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
항 목	수입액	기정액	증 감	항 목	지출액	기정액	증 감
합 계	756,063	703,062	53,001	합 계	756,063	703,062	53,001
전 입 금	232,851	180,500	52,351	비융자성 사 업 비	409,797	301,500	108,297
예 치 금 회 수	509,132	509,132	0	예 치 금	346,266	401,562	△55,296
이자수입	14,080	13,430	650	예 수 금 원리금상환	0	0	0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(수석전문위원 서효인)

○ 본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[3]에 따라 정책사업 기준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 변경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승인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「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·운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자금운용계획은 당초 7억 306만 2천 원에서 7억 5,606만 3천 원으로 5,300만 1천 원 증액됨. 수입에서는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증액하고, 지출에서는 예치금을 감액하여 비융자성 사업비를 1억 829만 7천 원 증액하는 내용임.

○ 세부적으로는 이동마을 한마음 축제 9,900만 원, 추석명절 행사 2,207만 7천 원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증액하는 한편, 이동마을 주민 장학금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관련 경비 등을 감액하는 것임.

3) 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해당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으로,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 다만, 증액되는 한마음 축제 및 추석명절 행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요구됨.

○ 아울러 이번 변경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당초 5억 913만 2천 원에서 3억 4,626만 6천 원으로 감액되는 만큼, 향후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○ 따라서 본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, 기금의 설치목적과 변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4. **질의·답변요지**: 기재생략

5. **토론요지**: 없음

6. **심사결과**: **원안가결**

7. **소수의견 요지**: 없음

8. **기타 필요한 사항**: 없음

창원특례시의회